

(2023학년도 제14차)

규정심의위원회

- 일시: 2023. 11. 09.(목), 14:10 ~ 16:00
- 장소: 혁신지원팀 회의실(문화관 301호실)
- 심의 안건

안건	입안부서
1. 「우영관규정」 개정 건	우영관
2. 「평생지도교수제 운영규정」 개정 건	진로취업지원센터
3. 「우석대학교 학사운영규정」 개정 건	입학관리팀
4. 「대학원 학칙」 개정 건	교학팀
5. 「직제규정」 개정 건	
6.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건	기획예산팀
7.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운영규정」 제정 건	기획예산팀

○ 추후 일정

기구명	안건 및 일시
교무위원회	- 2023.11.14.(화) 14:00
대학평의위원회	- 「대학원 학칙」 해당 - 미정(심의결과에 따라 소집 예정)
법인 이사회	- 「직제규정」 해당 - 미정(심의결과에 따라 승인 요청)

※ 차기 규정심의위원회: 2023. 11. 23.(목), 14:10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우영관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우영관	관련부서	진로취업지원센터
부서간 협의 결과	• 우영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진로취업지원센터 직원이 우영관 운영위원회의 간사로 지정된 점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함 • 우영관 운영위원회에 우영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진로취업지원센터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되어있는 점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함		
대학평의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2023학년도 행정부서 정기감사」 시정 조치 이행 - 「우영관규정」 제9조(운영위원회)에 의해 운영되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영관 직원이 간사를 하여야 함. 우영관 직원이 실제 운영위원회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영관규정」에는 운영위원회의 간사를 진로취업지원센터 직원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관련근거 (관계법령)	• 우영관 운영위원회 심의(2023.9.26)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제9조(운영위원회) - 진로취업지원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삭제 - 우영관 운영위원회 간사를 “진로취업지원센터 직원” 을 “우영관 직원” 으로 변경		
기대효과	• 업무에 따른 조정 및 규정의 명확화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없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포털 및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유무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첨부자료	「우영관 규정」 개정(안) 산·구조문대비표 1부		

「우영관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운영위원회) ①우영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우영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학생취업처장, <u>진로취업지원센터장<삭제></u>, 우영관장, 지도교수는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장은 학생취업처장이 된다. ③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u>진로취업지원센터</u> 직원이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학생취업처장, 우영관장, 지도교수는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장은 학생취업처장이 된다. ③ (현행과 같음)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u>우영관</u> 직원이 한다.
(신설)	<u>부칙</u> <u>이 규정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평생지도교수제 운영규정」		
입안형태	☐ 제 정		

「평생지도교수제 운영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5조(교수의 학생지도) ①교양대학 소속 교원 및 임상교원을 제외한 모든 전임교원은 평생지도교수제에 의한 학생지도(졸업생 포함)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년 등과 같이 학생지도가 불가능한 경우 소속학과(부) 교원에게 임시 배정하고, 그 현황을 진로취업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도교수는 상담시간을 CHAMP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 공지한다. ③지도교수는 매학기 재학생 1인당 <u>대면 상담 1회 이상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추가 상담은 전화, e-mail 상담을 포함한다.</u> ④지도교수가 출장 및 학회 참석 등으로 부재 시에는 휴학 및 자퇴상담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학과(부)장이 이를 대행하여야 한다. ⑤지도교수는 상담 후 상담지도 내용을 반드시 CHAMP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제5조(교수의 학생지도)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지도교수는 매학기 재학생 1인당 <u>1회 이상 상담(대면, 전화, e-mail 등)을 원칙으로 한다.</u> ④(현행과 같음) ⑤(현행과 같음)
제6조(전문상담) ①(<u>문구신설</u>) 추가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련부서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학사제도(전공과정 이수, 학점관리, 수강신청, 휴·복학, 자퇴 등)에 관한 상담- 학사관리팀 2. 전입생(편입생, 복학생, 모집단위간 이동 등)에 관한 상담 및 지도 - 학사관리팀, (<u>센터 신설</u>) 3. 학업부진(성적경고)자에 대한 상담 및 지도 - 학사관리팀,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생상담센터, (<u>센터 신설</u>) 4. 대인관계, 가치관, 진로탐색, 적성,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상담 - 학생상담센터 5.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강화 및 향상을 위한 상담 - 교수학습지원센터 6. 취업 및 진로 상담 및 지도 - 진로취업지원센터 7. (<u>호 신설</u>) 7. 그 밖의 대학생활 상담 - 관련부서 ②각 행정부서는 지도교수가 추가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제6조(전문상담) ①<u>지도교수</u>는 추가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련부서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전입생(편입생, 복학생, 모집단위간 이동 등)에 관한 상담 및 지도 - 학사관리팀, <u>진로취업지원센터</u> 3. 학업부진(성적경고)자에 대한 상담 및 지도 - 학사관리팀,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생상담센터, <u>글로벌교육지원센터</u>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u>창업 및 진로 상담 및 지도 - 창업교육·지원센터</u> 8. 그 밖의 대학생활 상담 - 관련부서 ②(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③전문적인 상담을 실시한 경우 각 행정부서에 서는 상담결과를 CHAMP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도교수에게 통보해 야 한다.	③현행과 같음
<u>(신설)</u>	<u>부칙</u> <u>이 규정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우석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입안형태	☐ 제 정		

「우석대학교 학사운영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편입학의 자격) ①학칙 제23조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하는 편입(이하 ‘일반편입’ 이라 한다)에 따른 3학년 일반 편입생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본교 재학생 및 휴학생의 경우에는 한의학과, (학과신설), 한약학과, 간호학과, 작업치료학과, 물리치료학과와 사범대학 소속학과에만 지원할 수 있다. 1. 4년제 대학 또는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 4학기 이상 이수한 자 중 65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로 65학점 이상 취득한 자 3. 산업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2학년(4학기) 이상 수료자로서 65학점 이상 취득(예정)자 4. 평생교육법 및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학 및 전문대학졸업 학력이 인정된 자 5.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제2조(편입학의 자격) ①학칙 제23조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하는 편입(이하 ‘일반편입’ 이라 한다)에 따른 3학년 일반 편입생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본교 재학생 및 휴학생의 경우에는 한의학과, 약학과, 한약학과, 간호학과, 작업치료학과, 물리치료학과와 사범대학 소속학과에만 지원할 수 있다. 1.~5. (현행과 같음)
(신설)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대학원 학칙」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대학원 교학팀	관련부서	해당사항 없음	
부서간 협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대학평의회	• 심의 해당			
입안사유 (추진배경)	1. 일반대학원 한국어교육학과 신설(석사과정) - 한국어교육을 기반으로 한 외국인 한국어교육 전공으로 해외 현지 한국어 교사와 통번역 전문가를 양성, 전문화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을 통해, 고급 외국인 교육 인재의 체계적인 양성을 목적으로 신설하고자 함 2.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감염관리전문간호사 과정 신설(석사과정) - 감염간호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전문인력 배양을 목적으로 신설하고자 함			
관련근거 (관계법령)	• 대학원위원회 심의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제4조(학과 편성 및 정원) [별표1] 대학원별 학과 및 정원 개정(안) -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인문사회계열 → (신설) 한국어교육학과 -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자연과학계열 → (신설) 감염관리전문간호사 • 제39조(학위수여) [별표2] 학위종별 개정(안) - 일반대학원 한국어교육학과 석사학위과정 → (신설) 문학석사 -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감염관리전문간호사) 석사학위과정 → (신설) 간호학석사			
기대효과	• 대학원 신입생 충원을 제고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있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포털 및 홈페이지)	-입안예고 공청회: 2023.11.9.(목), 오전 10:00 -전자공청회: 2023.11.7.(화) ~ 11.9.(목)		
	다. 의견제출 유무	반영예정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반영예정		
첨부자료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학과 편성 및 정원) ①각 대학원의 학과 및 학생정원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1.5.19, 2011.12.14, 2012.5.23, 2012.11.30, 2013.6.3, 2013.10.30, 2014.11.27, 2015.1.21., 2015.11.12., 2016.5.27., 2016.11.16., 2017.11.06., 2018.6.25., 2019.3.21., 2019.8.1., 2019.12.3., 2020.3.26., 2020.10.29., 2021.7.6., 2021.12.27., 2022.4.14., 2022.9.30., 2022.12.16., 2023.2.20., 2023.5.18.)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생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교육부장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4. 삭제 (2006.8.4.)	제4조(학과 편성 및 정원) ①각 대학원의 학과 및 학생정원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1.5.19, 2011.12.14, 2012.5.23, 2012.11.30, 2013.6.3, 2013.10.30, 2014.11.27, 2015.1.21., 2015.11.12., 2016.5.27., 2016.11.16., 2017.11.06., 2018.6.25., 2019.3.21., 2019.8.1., 2019.12.3., 2020.3.26., 2020.10.29., 2021.7.6., 2021.12.27., 2022.4.14., 2022.9.30., 2022.12.16., 2023.2.20., 2023.5.18., 2023.00.00.) ②(현행과 같음)
제39조(학위수여) ①각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소정의 시험과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와 학위청구논문대체심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해당학위를 수여한다. (변경 2003.4.30., 2003.6.4) (개정 2006.11.6., 2014.11.27., 2017.3.31., 2018.4.6.) ②각 대학원의 석사·박사학위 종별은 별표2와 같으며, 학위의 수여는 학위기(별지서식 제1호 내지 제6호)로써 행한다. (개정 2008.6.5, 2010.3.3, 2011.5.19, 2011.12.14, 2012.5.23., 2012.11.30, 2013.6.3, 2013.10.30, 2014.11.27, 2015.1.21., 2015.11.12., 2016.5.27., 2016.11.16., 2017.11.6., 2018.6.25., 2019.12.3., 2020.3.26., 2020.10.29., 2021.7.6., 2022.4.14., 2022.9.30., 2022.12.16., 2023.2.20., 2023.5.18., 2023.8.30.) ③각 대학원의 학위청구논문대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7.3.31.) (개정 2018.4.6.) ④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9조(학위수여) ①(현행과 같음) ②각 대학원의 석사·박사학위 종별은 별표2와 같으며, 학위의 수여는 학위기(별지서식 제1호 내지 제6호)로써 행한다. (개정 2008.6.5, 2010.3.3, 2011.5.19, 2011.12.14, 2012.5.23., 2012.11.30, 2013.6.3, 2013.10.30, 2014.11.27, 2015.1.21., 2015.11.12., 2016.5.27., 2016.11.16., 2017.11.6., 2018.6.25., 2019.12.3., 2020.3.26., 2020.10.29., 2021.7.6., 2022.4.14., 2022.9.30., 2022.12.16., 2023.2.20., 2023.5.18., 2023.8.30., 2023.00.00.) ③~④ (현행과 같음)
(신설)	부칙 이 학칙은 2023년 월일부터 시행한다.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별표 1】			【별표 1】		
대학원별 학과 및 정원			대학원별 학과 및 정원		
1. 일반대학원			1. 일반대학원		
계열	석사학위과정 학과	입학 정원	계열	석사학위과정 학과	입학 정원
인문 사회	교육학과	70명	인문 사회	교육학과	70명
	아동복지학과			아동복지학과	
	특수교육학과			특수교육학과	
	국제비즈니스학과			국제비즈니스학과	
	심리운동학과			심리운동학과	
	교육및문화콘텐츠개발학과			교육및문화콘텐츠개발학과	
	심리학과			심리학과	
	-			-	
	-			-	
	-			-	
	소방방재학과			소방방재학과	
	스포츠복지교육학과			스포츠복지교육학과	
	유아특수교육학과			유아특수교육학과	
	예술경영학과			예술경영학과	
	놀이심리재활학과			놀이심리재활학과	
	(신설)			한국어교육학과	
자연 과학	약학과		자연 과학	약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한약학과			한약학과	
	간호학과			간호학과	
	간호학과(가정전문간호사)			간호학과(가정전문간호사)	
	(신설)			간호학과(감염관리전문간호사)	
	직업재활학과			직업재활학과	
	작업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공학	물리치료학과		공학	물리치료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동아시아조경학과			동아시아조경학과	
	자동차공학과			자동차공학과	
	제약공학과			제약공학과	
	소방·안전공학과			소방·안전공학과	
의학	수소모빌리티공학과		수소모빌리티공학과	수소모빌리티공학과	
	한의학과		의학	한의학과	
예체능	체육학과		예체능	체육학과	
	스포츠의학과			스포츠의학과	
	태권도학과			태권도학과	
	스포츠과학과			스포츠과학과	
계	31개 학과	70명	계	33개 학과	70명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2】				【별표 2】			
학 위 종 별				학 위 종 별			
1. 일반대학원				1. 일반대학원			
계 열	학 과	학 위 종 별		계 열	학 과	학 위 종 별	
		석 사	박 사			석 사	박 사
인문 사회	국 어 국 문 학 과	-	문 학 박 사	인문 사회	국 어 국 문 학 과	-	문 학 박 사
	교 육 학 과	교 육 학 석 사	교 육 학 박 사		교 육 학 과	교 육 학 석 사	교 육 학 박 사
	아 동 복 지 학 과	문 학 석 사	문 학 박 사		아 동 복 지 학 과	문 학 석 사	문 학 박 사
	특 수 교 육 학 과	문학석사	문 학 박 사		특 수 교 육 학 과	문학석사	문 학 박 사
	국 제 비 즈 니 스 학 과	경 영 학 석 사	-		국 제 비 즈 니 스 학 과	경 영 학 석 사	-
	유아특수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유아특수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경 영 학 과	경 영 학 석 사	-		경 영 학 과	경 영 학 석 사	-
	심리운동학과	심리운동학석사	심리운동학박사		심리운동학과	심리운동학석사	심리운동학박사
	교육및문화콘텐츠개발학과	문학석사 교육학석사	문학박사 교육학박사		교육및문화콘텐츠개발학과	문학석사 교육학석사	문학박사 교육학박사
	심리학과	심리학석사			심리학과	심리학석사	
	글로벌외식경영학과	-	경영학박사		글로벌외식경영학과	-	경영학박사
	관광경영학과	-	관광경영학박사		관광경영학과	-	관광경영학박사
	사회적경제·경영학과	-	사회적경제학박사 경영학박사		사회적경제·경영학과	-	사회적경제학박사 경영학박사
	소방방재학과	소방방재학석사	소방방재학박사		소방방재학과	소방방재학석사	소방방재학박사
	스포츠복지교육학과	스포츠복지교육학 석사	스포츠복지교육학 박사		스포츠복지교육학과	스포츠복지교육학 석사	스포츠복지교육학 박사
	국제교육문화학과	-	교육학박사 문학박사		국제교육문화학과	-	교육학박사 문학박사
	예술경영학과	예술경영학석사			예술경영학과	예술경영학석사	
	놀이심리재활학과	놀이심리재활학 석사	문학박사		놀이심리재활학과	놀이심리재활학 석사	문학박사
	(신설)				한국어교육학과	문학석사	-
자연 과학	약 학 과	약 학 석 사	약 학 박 사	자연 과학	약 학 과	약 학 석 사	약 학 박 사
	생명과학과	이 학 석 사	-		생명과학과	이 학 석 사	-
	식 품 생 명 공 학 과	이 학 석 사	이 학 박 사		식 품 생 명 공 학 과	이 학 석 사	이 학 박 사
	한 약 학 과	한 약 학 석 사	한 약 학 박 사		한 약 학 과	한 약 학 석 사	한 약 학 박 사
	간 호 학 과	간 호 학 석 사	간 호 학 박 사		간 호 학 과	간 호 학 석 사	간 호 학 박 사
	간 호 학 과 (가정전문간호사)	간 호 학 석 사	-		간 호 학 과 (가정전문간호사)	간 호 학 석 사	-
	(신설)				간 호 학 과 (감염관리전문간호사)	간 호 학 석 사	-
	직 업 재 활 학 과	재 활 학 석 사	-		직 업 재 활 학 과	재 활 학 석 사	-
	작업치료학과	이학석사	-		작업치료학과	이학석사	-
공학	전기전자공학과	공 학 석 사	-	공학	전기전자공학과	공 학 석 사	-
	에너지전기공학과	공 학 석 사	공학박사		에너지전기공학과	공 학 석 사	공학박사
	동아시아조경학과	공학석사	-		동아시아조경학과	공학석사	-
	컴퓨터공학과	공 학 석 사	-		컴퓨터공학과	공 학 석 사	-
	건 설 공 학 과	공 학 석 사	-		건 설 공 학 과	공 학 석 사	-
	조경건설공학과	-	공학박사		조경건설공학과	-	공학박사
	자 동 차 공 학 과	공 학 석 사	공학박사		자 동 차 공 학 과	공 학 석 사	공학박사
	계약공학과	공학석사	-		계약공학과	공학석사	-
	계약화장품공학과	-	공학박사		계약화장품공학과	-	공학박사
	재난안전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재난안전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소방·안전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소방·안전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수소모빌리티공학과	공학석사			수소모빌리티공학과	공학석사	
의학	한 의 학 과	한 의 학 석 사	한 의 학 박 사	의학	한 의 학 과	한 의 학 석 사	한 의 학 박 사
예체능	체 육 학 과	체 육 학 석 사	체 육 학 박 사	예체능	체 육 학 과	체 육 학 석 사	체 육 학 박 사
	국 악 과	음악학석사	음악학박사		국 악 과	음악학석사	음악학박사
	스포츠의학과	스포츠의학석사			스포츠의학과	스포츠의학석사	
	태권도학과	체육학 (태권도전공)석사	체육학박사		태권도학과	체육학 (태권도전공)석사	체육학박사
	스포츠과학과	스포츠과학석사	스포츠과학박사		스포츠과학과	스포츠과학석사	스포츠과학박사

규 정 입 안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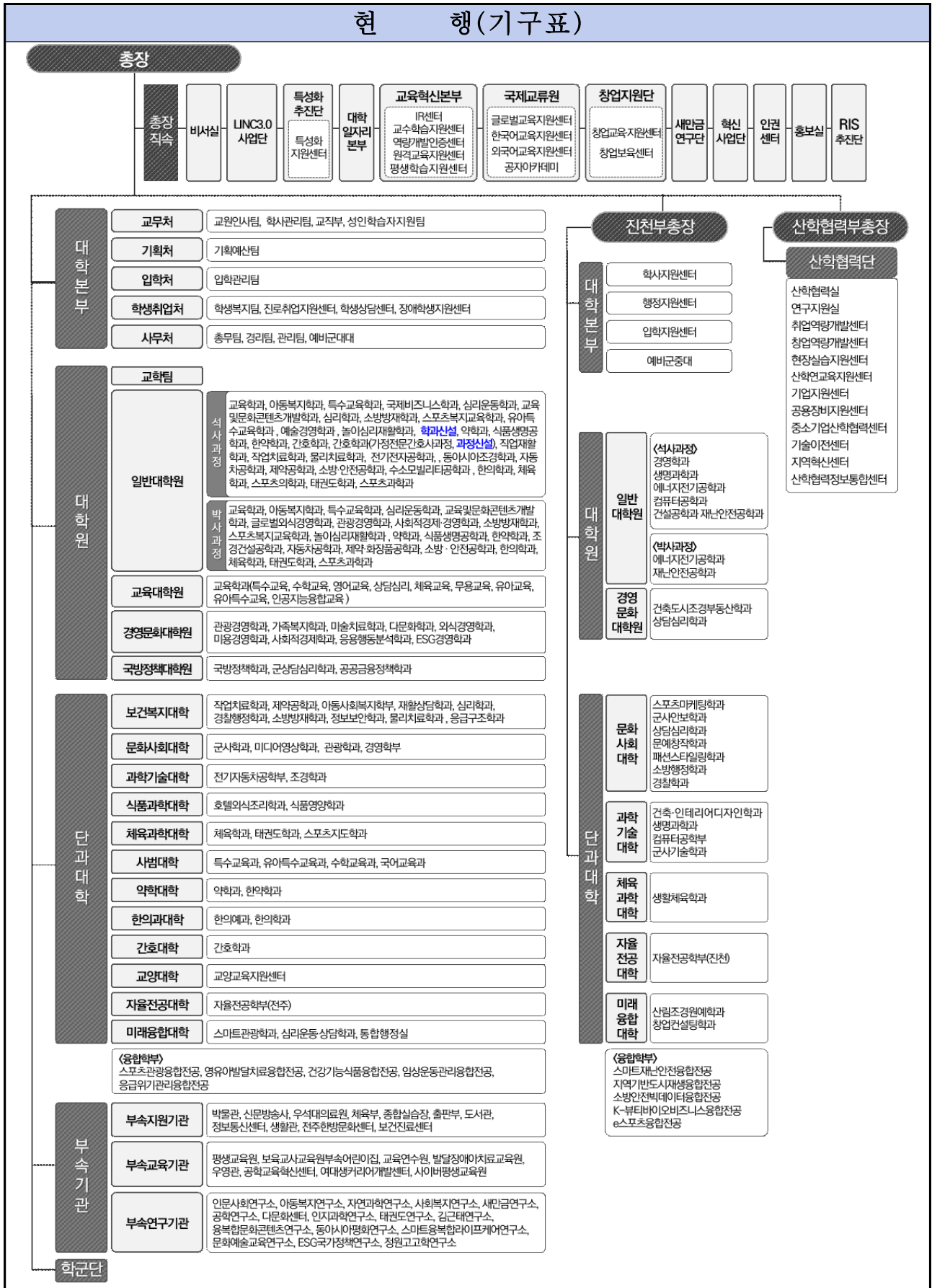
규정명	「직제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대학원 교학팀	관련부서	해당사항 없음
부서간 협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법인 이사회	• 심의 해당		
대학평의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1. 일반대학원 한국어교육학과 신설(석사과정) - 한국어교육을 기반으로 한 외국인 한국어교육 전공으로 해외 현지 한국어 교사와 통번역 전문기를 양성, 전문화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을 통해, 고급 외국인 교육 인재의 체계적인 양성을 목적으로 신설하고자 함 2.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감염관리전문간호사 과정 신설(석사과정) - 감염간호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전문인력 배양을 목적으로 신설하고자 함		
관련근거 (관계법령)	• 대학원위원회 심의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제36조(기구표) [별표] -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인문사회계열 → (신설) 한국어교육학과 -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자연과학계열 → (신설) 감염관리전문간호사		
기대효과	• 대학원 신입생 충원을 제고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있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포털 및 홈페이지)	-입안예고 공청회: 2023.11.9.(목), 오전 10:00 -전자공청회: 2023.11.7.(화) ~ 11.9.(목)	
	다. 의견제출 유무	반영예정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반영예정	
첨부자료	「직제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직제규정」 개정(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36조(기구표) 본교의 기구표는 별표 와 같다. (개정 2018.12.6., 2019.3.7., 2019.7.4., 2019.7.29., 2020.1.16., 2020.2.27., 2020.9.11., 2020.11.4., 2020.11.26., 2021.1.27., 2022.2.8., 2023.6.8., 2023.7.27., 2023.10.26.)	제36조(기구표) 본교의 기구표는 별표 와 같다. (개정 2018.12.6., 2019.3.7., 2019.7.4., 2019.7.29., 2020.1.16., 2020.2.27., 2020.9.11., 2020.11.4., 2020.11.26., 2021.1.27., 2022.2.8., 2023.6.8., 2023.7.27., 2023.10.26., 2023.00.00.)
(신설)	부 칙(학교법인우석학원- (2023. . .)) 이 규정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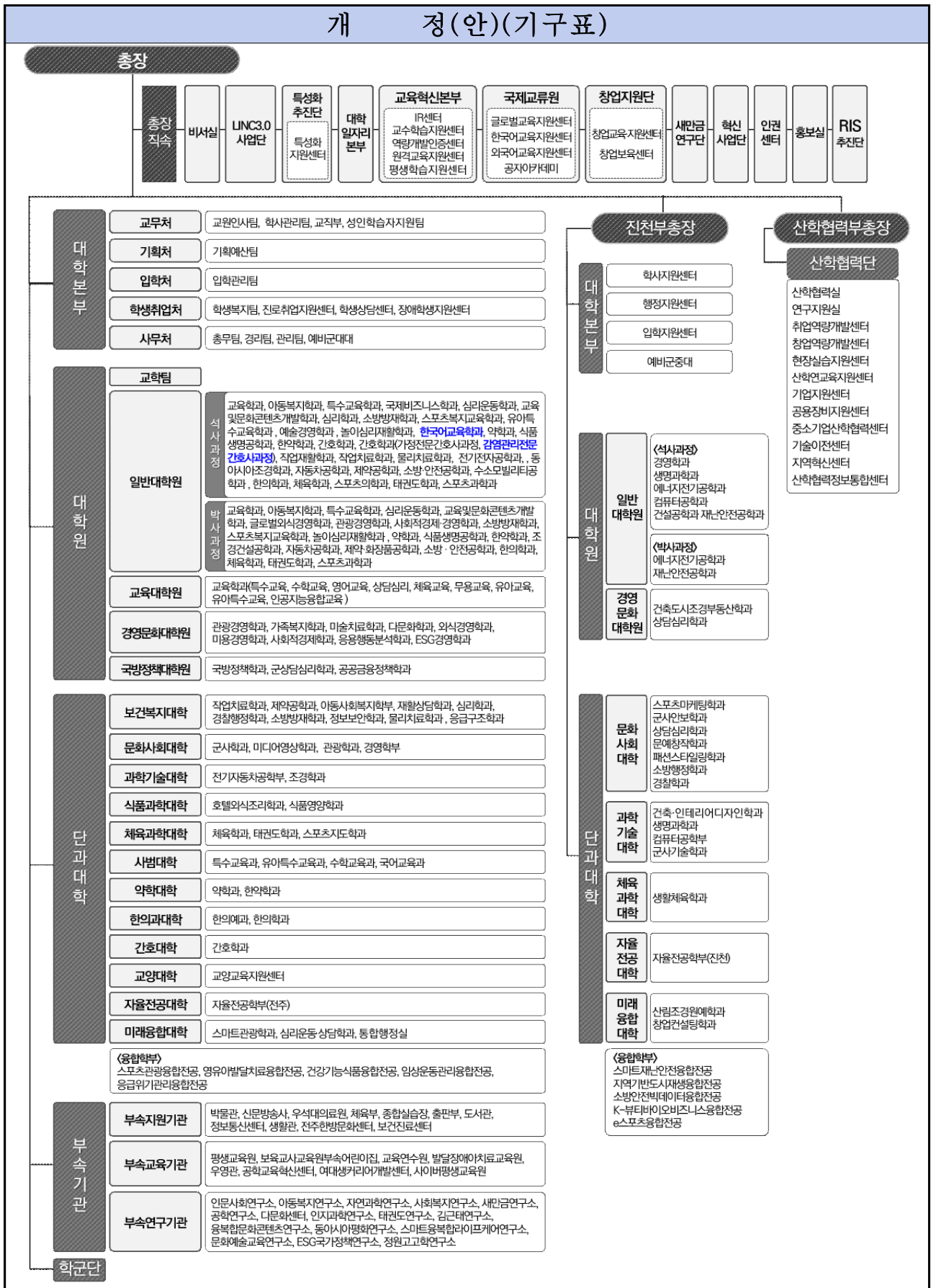
「직제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기구표)



「직제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안)(기구표)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기획예산팀		관련부서	기획예산팀																					
부서간 협의 결과	• 특이사항 없음																								
대학평의위원회	• 해당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중소기업 계약학과 「미래자동차공학과」 폐지 의결 및 폐지 신고																								
관련근거 (관계법령)	• 2023학년도 계약학과 운영위원회 의결: 2023.10.23. • 교육부 / 중소기업 계약학과 「미래자동차공학과」 폐지계획 신고: 2023.8.1.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계약학과 주관대학(우석대) 운영협약 해약: 2023.4.19. • 계약학과 운영위원회 / 중소기업 계약학과 「미래자동차공학과」 폐지 의결: 2023.4.10.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제2조(계약학과 설치) 제3항 - [별표 1]에서 미래전기자동차공학과 삭제 <table><tr><td>단과대학</td><td>모집단위명</td><td>모집정원</td><td>수여학위</td><td>비고</td></tr><tr><td>문화사회대학</td><td>국방학과</td><td>20명</td><td>군사학사</td><td></td></tr><tr><td>문화사회대학</td><td>군상담심리학과</td><td>15명</td><td>문학사</td><td></td></tr><tr><td>과학기술대학</td><td>미래전기자동차공학과</td><td>20명</td><td>공학사</td><td><삭제></td></tr></table>					단과대학	모집단위명	모집정원	수여학위	비고	문화사회대학	국방학과	20명	군사학사		문화사회대학	군상담심리학과	15명	문학사		과학기술대학	미래전기자동차공학과	20명	공학사	<삭제>
단과대학	모집단위명	모집정원	수여학위	비고																					
문화사회대학	국방학과	20명	군사학사																						
문화사회대학	군상담심리학과	15명	문학사																						
과학기술대학	미래전기자동차공학과	20명	공학사	<삭제>																					
기대효과	• 관련규정의 현행화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없음 ※ 계약학과 운영관련 상위 법령에 의한 절차로 별도의 공청회를 하지 않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포털 및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유무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첨부자료	•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 교육부 / 중소기업 계약학과 「미래자동차공학과」 폐지계획 신고: 2023.8.1.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계약학과 주관대학(우석대) 운영협약 해약: 2023.4.19. • 계약학과 운영위원회 / 중소기업 계약학과 「미래자동차공학과」 폐지 의결: 2023.4.10.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계약학과 설치) ①본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과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이상인 사업체 3.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4. 군부대(장교, 장기복무자 및 군무원 등) 5.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②계약학과 설치·운영기간은 최소 2년 이상으로 하되,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정한다. ③계약학과 명칭, 모집정원 및 학위명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2.11., 2018.2.20., 2019.1.8., 2020.12.29., 2022.2.24., 2022.5.24.)	제2조(계약학과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계약학과 명칭, 모집정원 및 학위명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2.11., 2018.2.20., 2019.1.8., 2020.12.29., 2022.2.24., 2022.5.24., 2023.00.00.)																																								
[별표 1] 계약학과 명칭·모집정원·학위명 <table><tr><th>단과대학</th><th>모집단위명</th><th>모집정원</th><th>수여학위</th><th>비고</th></tr><tr><td>문화사회대학</td><td>국방학과</td><td>20명</td><td>군사학사</td><td></td></tr><tr><td>문화사회대학</td><td>군상담심리학과</td><td>15명</td><td>문학사</td><td></td></tr><tr><td>과학기술대학</td><td>미래전자자동차공학과</td><td>20명</td><td>공학사</td><td></td></tr></table> (신설)	단과대학	모집단위명	모집정원	수여학위	비고	문화사회대학	국방학과	20명	군사학사		문화사회대학	군상담심리학과	15명	문학사		과학기술대학	미래전자자동차공학과	20명	공학사		[별표 1] 계약학과 명칭·모집정원·학위명 <table><tr><th>단과대학</th><th>모집단위명</th><th>모집정원</th><th>수여학위</th><th>비고</th></tr><tr><td>문화사회대학</td><td>국방학과</td><td>20명</td><td>군사학사</td><td></td></tr><tr><td>문화사회대학</td><td>군상담심리학과</td><td>15명</td><td>문학사</td><td></td></tr><tr><td>〈삭제〉</td><td>〈삭제〉</td><td>〈삭제〉</td><td>〈삭제〉</td><td></td></tr></table>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단과대학	모집단위명	모집정원	수여학위	비고	문화사회대학	국방학과	20명	군사학사		문화사회대학	군상담심리학과	15명	문학사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단과대학	모집단위명	모집정원	수여학위	비고																																					
문화사회대학	국방학과	20명	군사학사																																						
문화사회대학	군상담심리학과	15명	문학사																																						
과학기술대학	미래전자자동차공학과	20명	공학사																																						
단과대학	모집단위명	모집정원	수여학위	비고																																					
문화사회대학	국방학과	20명	군사학사																																						
문화사회대학	군상담심리학과	15명	문학사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운영규정」		
입안형태	☒ 제 정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운영규정(안)

[제정 2023.00.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석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교육부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업 운영

제2조(조직 및 구성) ①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특성화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두며, 추진단에 특성화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②추진단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임면권자가 임명하고 추진단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③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추진단에 전담교수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④추진단장은 사업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특성화 과제별 사업수행부서(학과(부))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추진단 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 계획 수립 및 변경
2. 사업 운영과 관리
3. 사업 관련 각종 보고서 작성 총괄
4. 사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5.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 관리
6. 연차별 사업예산 편성, 조정 및 정산
7. 사업 관련 위원회 운영
8. 기타 사업의 운영과 관리에 관련된 사항

제4조(사업수행부서(학과) 기능) 사업수행부서(학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성화 과제별 세부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2. 사업에 대한 구성원 의견수렴 및 교내·외 홍보
3.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프로그램 운영
4. 사업비의 적절한 집행 및 집행실적 제출
5. 사업성과 분석 및 환류를 통한 질 관리
6. 추진사업에 대한 각종 보고서 작성

제5조(사업비 집행 및 관리) ①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의 사업비는 대학(교비) 회계에 별도 계정(계좌)을 설치하여 중앙관리한다.

②사업비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는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사업의 회계 절차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전문기관의 기준 및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며, 그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우석대학교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사업 계획 및 집행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실무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집행계획 변경사항은 내부결재 등에 의거하여 변경 후 실무추진위원

회에 사후보고 할 수 있다.

제3장 위원회

제7조(사업추진위원회) ①사업 운영의 추진과 사업성과 총괄 관리를 위하여 사업추진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대학 중장기발전계획 및 특성화 방향에 기반한 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성과에 대한 총괄적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3. 기타 사업 총괄 관리 및 전략적 방향성 결정에 관한 주요 사항

②사업추진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지자체, 지역산업체, 지역기관 등을 포함한 13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사업추진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특성화지원센터장으로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사업 기간으로 하되 본교 보직자의 경우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자체평가위원회) ①사업의 자체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자체평가위원회를 두며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평가 계획 수립 및 시행
2. 사업 성과지표 적정성 및 성과 달성에 대한 평가
3.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4. 그 밖의 사업 자체평가 및 컨설팅
5. 자체평가 결과 환류

6. 그 밖의 사업평가에 관련된 중요 사항

②자체평가위원회는 추진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지역 및 산업체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12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자체평가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특성화지원센터장으로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사업 기간으로 하되 본교 보직자의 경우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자체평가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평가결과를 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추진위원회) ①사업의 전반적 관리를 위하여 실무추진위원회를 두며 기능은 각 호와 같다.

1. 사업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2. 연차 및 종합실적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심의
3. 사업 예·결산에 관한 사항 심의
4. 단일품목 3천만원 이상 실험·실습시설장비, 기자재 심의
5. 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 제·개정
6. 사업추진 회계, 성과 모니터링
7. 핵심 및 자율성과지표 점검 및 개선방안 도출
8.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 확산
9. 사업추진 기여도 평가를 통한 교직원 성과급 집행에 관한 사항
10.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실무추진위원회는 추진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참여학과(부) 및 지원 부서장을 포함한 14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추진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특성화지원센터직원으로 한다.

- ④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사업 기간으로 하되 본교 보직자의 경우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⑤사업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 ⑥분과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장 기타

제10조(수당 등 지급) 사업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외부인사에 대해서는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전문기관의 지침과 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수행한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관련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